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15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1.

발 의 자:이종배·김소희·권영진

이성권 • 이종욱 • 김성원

박덕흠 • 성일종 • 진종오

송석준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 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및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은 변동이 없어,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 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성이 낮음.

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기준을 1,000억원 이 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500억원"을 "1,000억원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)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예비타당성조사) ① 기획	제38조(예비타당성조사) ①
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<u>500</u>	<u>1,000</u>
<u>억원</u>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	<u>억원</u>
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	
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	
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	
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	
실시하고, 그 결과를 요약하여	
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	
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	
한다. 다만, 제4호의 사업은 제	
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	
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	
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	
으로 한다.	<u>.</u>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